

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전과기준)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개시전 3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18.03.01.)</p> <p>제12조(전과 방법) ① 총장은 전과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개시 전 학과별 예정인원과 접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전과 신청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을 행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(전과의 절차)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(개정 2024.05.01.)</p> <p>제14조(전과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야간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 2. 편입학한 자(단, 편입생은 3학년 2학기 개시 전 전과 신청 가능) 3. (삭제 2018.03.01.) <p>제15조(이수과목 및 학점)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된 학과(부)의 전공소요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.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선선택으로 인정하고, 전과 전에 취득학점 중 전입된 학과(부)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.(개정 2018.03.01.)</p>	<p>제11조(전과기준) <u>전과에 관한 기준 및 세부사항은 본교 전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제12조(전과 방법) “삭제”</p> <p>제13조(전과의 절차) “삭제”</p> <p>제14조(전과의 제한) “삭제”</p> <p>제15조(이수과목 및 학점) “삭제”</p> <p>“전과에 관한 규정” 과 내용중복으로 삭제</p>
	<p>부칙</p> <p>1.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</p>

개정사유: 1. 학칙과 전과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중복

☞ **전체구성원 의견수렴: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(홈페이지 및 업무용 메신저)**

☞ **대학원위원회 심의: 년 월 일 ☞ 기획위원회 심의: 년 월 일**

☞ **교무위원회 심의: 년 월 일 ☞ 대학평의위원회 심의: 년 월 일**